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12. 22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1997년 12월 19일

회부일자 : 1997년 12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143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1997. 12. 22)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박경국)

가. 제안이유

당면한 경제난의 극복을 위한 기업의 금융·채무정리와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1) 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

- 제조업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 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와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 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함 (안 제28조의2)

(2)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 제조업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수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함 (안 제28조의3)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오건영)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금융채무정리와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주거래 은행의 요청에 의해 매각하는 부동산이나 성업공사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기업간의 사업 양수 양도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여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감면규정을 신설
하여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